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 상장 근거 마련)
- 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마련)
- 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(개별주식 및 ETF에 대한 위클리옵션 도입 근거 마련)
- 라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신용위험거래증거금 산출방식 개선)
- 마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조회공시 근거규정 마련)
- 바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투자주의종목 지정 예외 사유 추가)
- 사.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(기업성장집합투자지구 집합투자증권의 종목별 예약한도 산정)
- 아.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(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의 거래참가 범위 재설정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(2026/4/15 개정 · 2026/4/2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국내외 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통해 투자자의 편익을 강화하고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하기 위함
 - 단일종목인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을 도입하고, 관련 기준을 정비
 - ‘국내-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(금융위, 2026.1.30)’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

2) 주요 내용

-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 상장 근거 마련(제113조 제2항 제4호 다목 (5), 제149조의3 제2항 제2호 다목)
 - 국내상장 우량주의 가격에 연동하는 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의 상장 허용
 -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기초자산 요건(시가총액, 유동성 등)을 준용(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)
- 주권 시장조치와의 연계 근거 마련(제116조 제1항 제2의2호, 제149조의7 제2호 다목, 제153조 제1항 제12호, 부칙 제2조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- 각 규정에 따라 주권이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되는 경우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·상장지수증권도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□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의 상관계수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근거 마련(제116조 제1항 제1호)

-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해당 상장지수펀드증권의 목표로 하는 가격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가 일정수준(패시브 0.9, 액티브 0.7) 미달 시 상장폐지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 - (기존)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증권이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를 규율
 - (개정) 1좌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를 규율

나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6/4/27 개정·2026/4/28 시행, 2026/4/26 개정·2026/5/1 시행)

1) 2026/4/27 개정·2026/4/28 시행

가) 개정 이유

-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·상장지수증권 도입과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비하기 위함

나) 주요 내용

□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 요건 마련(제123조의3, 별표 2의5)

-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기초자산 요건(시기총액, 유동성 등)을 준용하도록 기초자산 요건 마련
 - 해당 기초자산 요건 등을 포함하는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증권의 표준화 요건 마련

□ 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·인버스 상장지수펀드증권·상장지수증권의 상장·관리요건 정비 및 투자자 보호 요건 마련(별표 2의3, 별표 2의5, 부칙 제2조)

- 정방향 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 금지
- 정방향 상장지수펀드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상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일종목 기반 파생형 상장지수펀드증권·상장지수증권의 상장 허용
- 투자자가 단일종목 기반 상품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상장 시 종목명에 '단일종목' 용어를 포함하도록 의무화

- 각 규정에 따라 주권이 매매거래정지 될 경우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도 매매거래정지 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- 단일종목 기반 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과 기초자산인 주권의 변동성완화장치 발동을 연계하는 근거 마련

2) 2026/4/26 개정 · 2026/5/1 시행

가) 개정 이유

- '부실기업 신속 ·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'(2026.2.12., 관계기관 합동) 관련 조치로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축소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 하기 위함

나) 주요 내용

- 상장폐지절차 효율화(제19조 제3항)
 -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축소
 - (기존) 1심 : 최대 1년, 2심 : 최대 1년, 1+2심 합산 : 최대 2년
 - (개정) 1심 : 최대 1년, 2심 : 최대 0.5년, 1+2심 합산 : 최대 1년

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(2026/4/15 개정 · 2026/6/2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위클리옵션의 대상상품을 확대하여 코스피 6000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ETF의 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개별주식 및 ETF에 대한 위클리옵션 도입 근거 마련(제9조, 제30조, 제37조의7)
 - 위클리상품에 대한 총칙 근거 조항 마련
 - 위클리옵션의 대상 상품을 개별주식옵션 및 ETF옵션으로 확대

라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6/4/9 개정 · 2026/4/13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신용위험거래증거금 제도의 회원 포지션 집중 제한 효과를 제고하고, 위험유발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산출 및 납부방식을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비현금성 대용증권 납입 한도 명확화(제91조 제1항 제2호)
 - 자기분 거래증거금에 적용되는 비현금성 대용증권 납입 한도는 순위험증거금액에 적용됨을 명확화
 - 회원의 자기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그룹의 경우 제94조의 순위험거래증거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

- 신용위험거래증거금 산출방식 개선(제94조의2 제1항 및 별표 19의5)
 - 회원별 순위험거래증거금 합계액(자기분과 위탁분 합산)에 순위험증거금비율에 따라 산출된 부과율을 적용하여 신용위험거래증거금 필요액 산출
 - (순위험증거금비율) 회원별 순위험거래증거금 합계액 ÷ 신용위험한도액
 - (부과율) 신용위험거래증거금 부과율

순위험 증거금비율	1.5 이상~2 미만	2 이상~3 미만	3 이상~4 미만	4 이상~5 미만	5 이상
부과율	2.5%	5.0%	15.0%	20.0%	30.0%

- 신용위험거래증거금 납입 방법 변경(제94조의2 제2항)
 - 신용위험거래증거금을 위탁자의 재산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납입 수단 제한
 - 자기 재산으로 납부시 현금 및 현금성 자산
 - 위탁자 재산으로 납부시 현금 및 외화

- 거래증거금 산출 단위 명확화(제93조 제1항)
 - 거래증거금 중 순위험거래증거금에 한하여 계좌별로 산출됨을 명시(신용위험거래증거금은 회원단위 산출)

- 위탁자 재산 사용시 통지 의무 신설(제94조의2 제3항)
 - 위탁자 재산으로 신용위험거래증거금 납부시 해당 내역을 위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

마.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(2026/4/24 개정 · 2026/4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벤처·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코스닥시장에 도입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마련하기 위함
 - ‘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(BDC)도입으로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’(2025.8.27., 금융위) 참고

2) 주요 내용

- 새벽공시 허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(제21조의5 신설)
 -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까지 공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를 신고기한의 다음날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30분전까지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
 - BDC는 정규장 개시 전 시간외시장이 없어 9시에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
-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조회공시 근거규정 마련(제21조의6 신설)
 - BDC 존립에 관한 합병, 감사의견 비적정, 금융위원회의 등록취소 처분 사항에 한하여 조회공시 요구
 - 기업공시와 마찬가지로 조회공시 관련 풍문과 보도는 거래소가 수집한 내용 및 일반일간신문 등의 보도로 제한
 - 일반일간신문, 경제분야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기사
 - 미확정공시의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 의무와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의무 부과
 - 미확정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의 재공시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법인이 미확정공시 당시에 명시한 기간내에 재공시할 수 있음
- 중대한 소송의 제기(제21조의7 신설)
 - 기업성장투자회사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효력이나 경영, 집합투자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제기 시 공시의무 부과
- 불성실공시(공시변경)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(제21조의8 신설)
 - 자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공시내용 중 분기 중 총 취득금액 또는 분기 중 총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
 - 평가금액의 변동에 관한 공시내용 중 변동비율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
 - 투자자산의 추가취득과 일부 또는 전부 처분에 관한 공시내용 중 변동수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

- 투자자산의 추가취득과 일부 또는 전부 처분에 관한 공시내용 중 변동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할 때

□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사실의 공표방법(제21조의9 신설)

-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불성실공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

□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정지를 위한 규정 신설(제21조의10)

- 조회공시 불응시 위반사실 확인시점부터 조회결과를 공시한 후 30분이 경과한 때에 매매거래를 재개
 -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 다음날 매매거래 재개
 - 공시시점이 당일 정규시장 거래개시 시간 이전인 경우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후 30분이 경과한 후 재개
- 투자자보호를 위한 경우 1일간 매매거래정지
 -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

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신고 절차 신설(제21조의11)

-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의 절차와 필수 제출 서식 마련

바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6/4/24 개정 · 2026/4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기업성장집합투자증권 상장제도 도입에 따라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 종목의 특성 및 제도 도입 초기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 종목을 투자주의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투자주의종목 지정 예외 사유 추가(제3조 제6항 제4호)

- 종목의 특성 또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종목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사유 신설

사.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6/4/17 개정 · 2026/4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벤처·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시장이 코스닥시장 내에 개설됨에 따라 대응증권에 관한 사항 등 청산결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을 대응증권 중 주식군으로 분류하고 주식군의 적격성 평가 적용(제45조 제1항, 제47조 제1호)
 - 유동성, 신용평가등급 및 수익률 등이 거래소가 정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대응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대응증권의 대응가격을 조정하거나 대응증권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(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제34조 제2항)
 -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응증권이 상장주권,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응증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
-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 산정(제46조 제1항 제2호 다목)
 -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제17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기준가격에 상장예정증권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
-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및 대응가격 산출(제48조 제1호, 제49조 제1항, 제50조, 제52조 제1항, 제54조)
 - (산출 및 적용시기)
 - 상장지수증권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은 일별로 산출하여 그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
 - 수익증권, 비상장투자회사주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산출기준일에 산출하여 적용 초일부터 그다음 적용초일의 전일까지 적용
 - (산출방법) 대응증권의 대응가격은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
 - 상장지수증권,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10원 금액 미만은 버림
 - (기준시세와 사정비율)
 -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 기준시세는 상장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공표된 기준가격으로 하며, 상장일 전일에 공표되는 경우에는 17시까지 공표된 것으로 한정
 - 사정비율은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직전 1년간 매매거래일의 종목별·일별 거래대금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는 제외) 및 수익률을 기준으로 유동성 등급 및 수익률 등급을 부여하여 산출

아.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(2026/4/28 개정 · 2026/5/4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종전형집합투자지구 상장형 수익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지구 도입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의 거래참가 범위를 재설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집합투자증권전문회원의 거래참가 범위(제8조의2)
 - 상장형 수익증권, 기업성장투자회사주식, 기업성장투자신탁수익증권을 추가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